

돈통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돈통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돈통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돈통"이란 이용자가 은행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 및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모바일 사설인증"이란 이용자가 지정한 모바일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간편비밀번호(6자리 비밀번호), 얼굴 등의 바이오정보로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및 식별, 거래 승인을 위한 사설 인증서입니다.
3. "리워드"란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행사,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 참여, 가맹점에서의 혜택 적립, 결제 보내요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 제휴사가 이용자에게 소정의 적립기준에 따라 돈통으로 무상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서비스"란 돈통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환불, 보내요 및 부가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5. "부가 서비스"란 이용자의 카드, 쿠폰, 상품권, 멤버십, 스탬프 등의 구매, 가입, 이용 등에 대하여 은행이 직접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이행한 후 은행의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합니다.
7. "가맹점"이란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은행과 가맹점 계약, 제휴 계약 등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을 승인 받은 기업,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8. "제휴사"란 은행과 제휴계약,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일반 기업, 간편송금/결제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9. "충전"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 등으로 돈통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결제"란 이용자가 가맹점 또는 제휴사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그 대가를 돈통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환불"이란 은행이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제휴사의 제휴사 머니, 계정 등으로 돈통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환불 수수료"란 환불 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3. "보내요"란 이용자가 돈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용자 또는 비회원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14. "보내요 수수료"란 이용자가 보내요를 이용할 때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5. "주세요"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충전된 돈통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6. "ATM출금"이란 돈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또는 제휴사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7. "ATM출금 수수료"란 ATM출금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8. "하나머니 서비스"란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관계사가 참여하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말합니다.
 19. "관계사"란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하나손해보험 등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20. "제휴사 머니"란 제휴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 및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을 말하며,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운영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자 정보 관리)

- ①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각종 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휴대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업무처리를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은행의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의해 관리되며 은행은 이용자 등록 시 이용자로부터 은행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④
- ③ 은행은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합니다. 단, 관련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합니다.

제 4 조 (이용자의 자격 및 관리)

- 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는 이용자 자격을 부여 받게 되며, 은행은 이용자에게 대해 약관 등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비밀번호 등 서비스 이용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련 규정 변경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email, 유선통화, LMS/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통통을 제10조에 따라 환불하고 이용자와의 거래 및 이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제한)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수행한 후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때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용자 등록 후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④ 이용자가 휴대전화번호 변경, 스마트폰 변경, 신규 가입 등 휴대전화 관련 사항을 변경 하거나 은행 또는 제휴사가 제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 등을 최초 설치 하거나 또는 삭제 후 재설치 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인증절차 등을 통해 본인임을 다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
- ⑤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1.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고유식별정보와 성명이 불일치할 경우

2. 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3. 기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
4. 은행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이용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 이후 재가입하는 경우
5. 만 14세 미만의 고객
6. 기타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 6 조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승낙 이후라도 이용 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정지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 합니다. 단, 아래 2호, 3호, 5호, 6호, 7호의 사유로 이용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1. 서비스 가입 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 약관에 관련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해킹 또는 고의적인 시스템 과부하 유발 행위 등 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한 경우
 4. 이용자가 은행 및 타인의 권리,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라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6.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변경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변경 전 휴대전화번호를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입증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는 경우
 7. 제5조 제⑤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 ②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고객센터의 전화상담, 전자민원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비스의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은행은 돈통의 잔액을 전액 환불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시 돈통의 잔액이 환불 수수료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돈통의 잔액 환불은 불가능하며, 이용자는 환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시 회원이 가입한 부가 서비스상의 권리와 의무는 "부가서비스"의 약관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3년 이상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합니다.

- ⑦ 이용자에게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한 돈통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보유한 돈통은 은행이 별도 정하여 고시한 시점에 제휴사 머니 등으로 환불되고, 환불이 완료될 경우 그 결과를 통지(e-mail, LMS/SMS 등)한 후 별도의 절차없이 해지 처리됩니다.

제 7 조 (이용한도 및 방법 등)

- ① 서비스 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합산 및 통합 관리하며, 거래 취소 또는 에러 발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돈통 증가	충전 (자동충전포함)	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돈통 감소	결제	합산하여 500,000원	합산하여 500,000원 (2,000,000원)
	보내요		
	환불		
	ATM출금		
돈통 잔액		500,000원 (2,000,000원)	

1. ()안의 한도는 은행이 대면확인을 통해 이용자 본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연결한 돈통에 한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이용자의 경우에 은행은 이용한도를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인증방법)

-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인증 방법은 은행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이용자 등록 시 설정한 모바일 사설인증(간편비밀번호, 얼굴인증 등), 추가인증 등 은행이 정한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에 필요한 중요정보(패스워드 등) 관리 소홀이나 누설 등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에 사용하는 인증 종류 및 오류입력 제한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편비밀번호	얼굴인증
구성	숫자 6자리	얼굴정보(생체정보)
인증오류 제한횟수	5회(연속)	5회(연속)

④ 인증오류 제한횟수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⑤ 패스워드 등 본인의 인증정보를 분실하거나 오류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상의 별도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인증을 재설정 해야합니다.

제 9 조 (돈통의 충전)

① 돈통의 충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충전

가. 은행이 각 이용자 별로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하여 충전하는 방법

나. 이용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전하는 방법

다.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충전하는 방법

2. 자동충전

가. 사전에 조건부 자동 충전용 계좌를 등록하고 일정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돈통의 잔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일정금액(충전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충전 금액은 기준금액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나. 사전에 자동 충전용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보내요 등의 거래 시 돈통의 잔액이 부족하게 될 경우, 해당 부족 잔액이 자동으로 충전되어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② 자동충전을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타 계좌로의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충전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타 대금결제 및 자동이체 미 실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충전이 완료된 돈통의 잔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연동 계좌의 비밀번호 오류 입력 횟수 초과

2. 최대 충전 한도 초과

3.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정지된 경우
4. 연동 계좌의 출금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
5. 연동 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경우
6. 연동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거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환불방법)

- ① 이용자는 환불 수수료를 부담하고 돈통의 잔액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환불은 제한됩니다.
 1. 돈통의 잔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2. 제14조 ④항에 따른 리워드인 경우
- ③ 은행은 환불 시 이용자에게 수취 계좌번호, 수취 기관, 명의자 정보,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환불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 제휴사 머니 등으로 가능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돈통의 잔액을 제휴사머니로 환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휴사 가입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⑦ 이 약관 및 은행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⑧ 다음 각 호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시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돈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돈통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돈통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기준)에 기록된 잔액이 100 분의 20 이하인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돈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돈통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 가맹점 폐업
 - 나.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 다. 은행의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3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11 조 (ATM 출금 이용)

- ① 이용자는 제7조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돈통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제휴사의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ATM 출금 시 고유식별정보, 출금 인증번호 등 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으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보내요, 주세요 이용)

- ① 이용자는 제7조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돈통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요 기능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비회원에게 보낼 수 있으며, 수취인은 이를 돈통 또는 제휴사머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취인이 돈통으로 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비회원인 경우 은행이 정한 SMS 등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내에 제5조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 미등록 등으로 수취인이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취인이 제휴사머니로 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제휴사의 회원이 아닌 경우 제휴사가 정한 SMS 등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내에 제휴사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휴사 회원 미가입 등으로 수취인이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④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보내요 기능을 이용할 때, 수취인에 대한 확인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주세요 기능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주세요 기능을 통해 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용자에 대해 은행은 주세요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주세요 및 보내요 기능 이용 시 상대방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오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결제방법)

- ① 이용자는 제7조에서 정한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돈통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로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결제 기능을 이용하면 돈통의 잔액에서 해당 금액이 즉시 차감됩니다.
- ③ 이용자가 결제한 후 해당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 취소 즉시 거래 취소 금액을 이용자의 돈통으로 환원합니다. 단, 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 은행과 가맹점 또는 제휴사가 이미 대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은행은 가맹점 또는 제휴사로부터의 정당한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 처리하거나 가맹점 또는 제휴사가 직접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③항에서 정한 결제 취소할 경우, 취소금액에서 본 결제로 지급한 리워드는 차감하고 환원합니다.

제 14 조 (리워드 방법)

-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리워드 지급 기준을 승인하고 돈통에 충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리워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충전, 보내요, 결제, 부가서비스 등의 행위에 대한 리워드 제공
 - 2.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을 통한 제공
 - 3. 제휴사 가맹점의 혜택 적립
- ③ 은행은 돈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리워드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휴사가 특정 거래에 대하여 제공한 리워드는 해당 제휴사와의 거래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경우의 리워드는 최초 제공하는 시점부터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안내합니다.
- ⑤ 리워드의 제공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 ① 은행(또는 제휴사)은(는) 각 호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모바일 멤버십의 가입
 - 2. 쿠폰, 상품권의 판매
 - 3. 구매 및 결제횟수를 관리하는 스탬프 기능
 - 4. 기타 은행이 제휴사와 합의하여 제공하는 추가 기능
- ② 이용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제휴 멤버십 중 가입하고자 하는 멤버십을 선택하여 해당 모바일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휴 멤버십에 대하여 멤버십 안내 및 신청을 위한 화면 등을 제공하며 해당 멤버십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에 있습니다. 은행은 제휴사의 멤버십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쿠폰, 상품권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제휴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와 회원 각각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제휴사와 이용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⑤ 은행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쿠폰 및 상품권에 대한 지급결제대행으로서 이용자가 구매한 쿠폰, 상품권의 결제 대금을 제휴사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 이용자가 구매 또는 다운로드 받은 쿠폰 및 상품권은 각각 고유의 유효기간을 가지는데, 은행은 이용자가 구매한 쿠폰 및 상품권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아 쿠폰 및 상품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⑥ 은행은 제휴사와 합의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16 조 (수수료)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등에 안내합니다.

수수료 항목	종량제(건별 부과)
“ATM출금” 수수료	- 당행 CD/ATM :(마감 전, 후)최대 1,000원
“환불” 수수료	- 당행 : 면제, 다른 은행 : 최대500원
“보내요” 수수료	- 최대 100원
“주세요” 수수료	- 최대 100원

- 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의 신청 및 책임)

- ① 이용자(또는 대리인)는 서비스 이용 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경위, 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내용, 이용 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③ 이용자는 은행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은행에 책임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은행은 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 및 제휴사에서의 결제 시 판매자 및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연결된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① 이용자는 돈통 서비스 이용 관련 인증정보(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등 중요 정보의 유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폰 단말기의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통지 또는 신고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제 20 조 (은행의 책임 및 면책)

이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해 배상 및 면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1 조 (이용시간 및 서비스 변경, 중단)

-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입니다.
- ② 은행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 등으로 공지합니다.

-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 및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상기 제3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즉시 은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e-mail, 유선통화, LMS/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22 조 (약관 개정 및 효력)

-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 (준용규정 및 관계법령)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가맹점/제휴사 약관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제7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200만원 한도는 별도 고지후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됩니다.